

「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」 관련 의견 제출

□ 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

- (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) 표결의 선포방법 등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법령 규정을 삭제 또는 조례 등에 위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
- (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)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권 강화 방안 마련
- (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)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추진
- (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)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 존중 의무,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* 공시제도 도입

□ 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견

- 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에 대한 종합 의견
 - 자치분권은 중앙·지방 간 분권뿐 아니라, 기관대립형(단체장-의회)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이 중요한데, 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에는 전체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과제는 단 하나뿐이며, 행안부 ‘자치분권 로드맵’과 마찬가지로 「자치단체의 자율성·책임성 확대」 대분류의 하위과제로만 다루고 있음 따라서 대분류에 「지방의회 견제·감시 기능강화」로 하고 지방의회 관련 과제를 확대하여야 함
 - 행안부가 목표로 하는 「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이 핵심과제인데 이에 관한 내용 누락되어 있으므로 핵심과제로 채택을 촉구함

-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와 달리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지방의회 간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함
-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산하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과제 또한 누락한 것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

○ **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**

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법령 규정의 삭제 또는 조례 등에 위임

⇒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정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함

○ **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**

합리적인 인사권 강화 방안 마련

⇒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·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과제임. 또한,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‘의회직’ 신설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인사교류협의회 설치를 촉구함

○ **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**

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추진

⇒ 전문위원 등과 같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또한 중요한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없음. 따라서 광역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추진을 요구함

○ **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**

의정활동에 관한 정보*공시제도 도입

⇒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보여짐

□ 「지방의회 견제·감시 기능강화」 과제 반영 요구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지방의회 견제·감시 기능 강화 | 6-1.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|
| | 6-2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 신설 |
| | 6-3. 자치조직권 강화 |
| | 6-4. 자치입법권 강화 |
| | 6-5.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|
| | 6-6. 인사청문회 도입 |
| | 6-7.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|

6-1.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

■ 2018년도 정부예산 약 429조 VS 전국 시·도예산 약 210조

- 국회의원(300명) 1인당 : 약 1조 4,300억 예산심의 (※ 개인보좌직원 9명)
- 광역의원(824명) 1인당 : 약 2,548억 예산심의 (※ 개인보좌직원 0명)
- 서울시의원(110명) 1인당 : 약 3,909억 예산심의 (※ 개인보좌직원 0명)

■ 광역의회 조례심의 건수 및 의원발의 건수 급증

- 광역의회 조례심의 건수 : 6,832건(2006.7~2010.6) ➔ 8,911건(2010.7~2014.6)
- 광역의원 1인당 조례심의 건수 : 9.3건 ➔ 10.6건 (기존대비 14.2% 증가)
- 광역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 : 2.8건 ➔ 4.9건 (기존대비 75.5% 증가)
- 서울시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 : 2.6건 ➔ 5.3건 (기존대비 105.2% 증가)

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·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지방의회 역량제고의 한계에 봉착

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부재 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

6-2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 신설

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 ➔ 인사권 제약

- 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
- (개선안)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: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
- (개선안) 지방의회에 의회직렬 신설 추진

6-3. 자치조직권 강화

■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에 대한 통제 → 자치조직권 침해

- 대통령령 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의해 엄격히 통제
- (개선안)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대한 자율성(조례에 의한 규정) 부여 필요

6-4. 자치입법권 강화

■ 법령상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자치입법권의 위상 저해

- 지방자치법(제22조)의 조례제정 규정 : ‘법령의 범위 안에서’ → 상위법령의 하위 시행규칙적 법규로 전락
- 규제적 조례제정 및 조례위반에 대한 제재부과에 반드시 ‘법률의 위임’ 필요 → 조례의 실효성 저해
- (개선안) 지방자치법(22조) 규정을 ‘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’ 로 개정 : 조례제정권 확보
- (개선안) 지방자치법(22조) 단서규정(‘법률의 위임’) 삭제 : 조례실효성 확보
- (개선안) 지방자치법(27조) 개정을 통해 ‘일정한 범위의 형벌’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 : 조례규범력 강화

6-5.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

■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상위법령 통제 →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훼손

- 지방의회 관련 예산은 ‘지방재정법’ 및 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’에 의해 엄격히 통제
-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(통계목) 외에 새로운 비목 설정 불가
- 특히 ‘의정운영공통경비’를 제외한 8개 항목은 고정비 또는 경직성 경비 → 능동적 의정활동 위축
- (개선안)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‘지방의회 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’

6-6. 인사청문회 도입

-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제도 부재 → 행정의 민주성·책임성 문제 발생
 -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 및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장 임명 등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필요
 - 8개 시·도에서 협약 등을 통해 ‘인사청문회’ 시행 → 법적 근거 부재로 인사청문회 대상선정 및 검증절차 상의 한계 발생
 - (개선안) 지방자치법 상에 ‘인사청문회’ 관련 조항 신설 : 인사투명성 제고

6-7.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

-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→ 지방의회 간 운영 및 지원 혼선 초래
 - 지방의회 교섭단체 요건 및 구성, 지원 등에 대한 상위법 규정 부재
 - 지방의회 간 교섭단체 요건 및 구성, 지원체계가 달라 혼선 초래 → 합리성, 효율성 저하
 - (개선안) 지방자치법 상에 ‘교섭단체’ 관련 조항 신설 :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 강화